

사회복지대학원 학칙

제정일: 2001.03.01

개정일: 2018.02.1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이론과 응용분야를 연구하고, 사회복지분야의 지도적 인격과 창조적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교육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대학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과정 및 전공

제2조 (과정)

본 대학원은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이하“석·박사통합과정”이라 부름)과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본교 학부와 석사과정을 연계하는(4+1) 학부-대학원 연계프로그램(이하 “연계과정”)을 둘 수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특별단기 공개 교육과정, 본원과 외부 연구기관(이하 ‘학·연’이라 부름) 및 본원과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학·산·관’이라 부름)과의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제2조의 2 (두뇌한국 21 사업단)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으로 두뇌한국21 사업 선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두뇌한국21 사업단을 둘 수 있다.

제3조 (정원 및 과정)

①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은 석사학위과정 44명, 박사학위과정 9명으로 하며, 연구과정의 정원은 약간 명으로 한다. 다만, 석·박사통합과정의 입학정원은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산정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의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②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전공명칭은 사회복지학전공으로 한다.
- ③ 세부관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학생은 두 개의 분야를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1. 가족·청소년복지
 2. 공적부조·취약계층
 3. 국제사회·아동복지

4. 근로자복지
5. 노인복지
6. 비영리조직관리
7. 사회보장
8. 사회복지전달체계
9. 장애인복지
10. 정신보건·의료사회복지

- ④ 세부관심분야는 학생이 선택하되, 제1세부관심분야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단,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제1세부관심분야를 변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 ⑤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공통기초과목, 공통필수과목, 공통선택과목, 세부관심분야심화과목 및 현장실습으로 이루어진다.
- ⑥ 박사학위과정은 사회복지학박사(Ph.D.) 과정으로 한다.
- ⑦ 석·박사통합과정은 동조 제1항에서 제6항을 적용한다.

제3장 입 학

제4조 (입학시기)

본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개강일 이전으로 한다.

제5조 (지원자격)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①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받을 예정인 자 또는 학사학위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자.
- ②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 ③ 석·박사 통합과정 : 동조 제 1호를 적용한다.

제6조 (입학전형방법)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심사, 구술시험에 의한 수시1차 전형과 수시2차 전형으로 한다.

제7조 (지원절차)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입학할 지원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편입학)

본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의 편입학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여석이 있는 경우에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과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할 수 있으며 시기, 전형방법 및 절차는 입학의 경우에 준한다.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 ① 석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한자.

② 박사학위과정 :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유사 전공분야의 박사학위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한자.

제9조 (정원외 입학)

외국인 등으로 본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전형에 의하여 정원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규정의 적용은 대학원 학칙 및 제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장 등록 및 학적

제10조 (등록)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처음 4학기 까지,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은 처음 6학기 까지는 정규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후에는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은 석사학위만 취득할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을 적용한다.

② 연구등록은 각 학위과정별 정규등록을 초과한 학기의 등록을 말하며, 연구등록자의 납입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연구등록자라 할지라도 “연구지도” 이외의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업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 3항에 따른 납입금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등록학생의 권한)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 (등록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등록(납부)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학칙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다.

제13조 (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학생 휴학의 총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은 3년(6학기), 연구과정은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신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휴학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휴학 최대 학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1.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
2.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되, 최대 4학기로 한다.

제14조 (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

- ①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②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③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학업부실, 성행불량 또는 그밖의 사유로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제16조 (자퇴)

자진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재입학)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이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 3호, 제16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

제5장 수업 및 학점

제18조 (재학연한)

- ① 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4년(8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박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7년(14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석·박사통합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1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 (폐강 및 추가개설)

- ① 개설 교과목 중 수강신청자 수가 5명 이하일 경우 해당 과목을 폐강할 수 있다.
- ②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에 계절학기를 두어 추가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 (이수과목)

- ① 본 대학원 각 학위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은 본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② 각 학위과정 학생은 교과과정표에 따라 공통과목과 전공심화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이수학점)

- ① 석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51학점으로 하나, 학부전공자는 공통기초과목 9학점을 기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57학점으로 하며, 사회복지석사과정 이수자는 소정의 절차(학점인정원 심사)를 거쳐 최저 6학점, 최대 15학점까지 신청에 의해 기 취득한 것으

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72학점이며, 학부 및 석사 전공자의 경우 공통 기초과목 9학점을 기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개별지도연구(Independent Study)에 관해서는 별도의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22조 (학기당 이수학점)

각 학위과정별 학기당 취득학점은 15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 (학업평가 및 재수강)

① 학업성적의 평가는 A+, A0, A-, B+, B0, B-, C+, C0, C-, F, I, W, P, NP로 구분하며 그 표시는 다음과 같다.

등 급	평 점	설 명
A+	4.3	우 수
A0	4.0	
A-	3.7	
B+	3.3	우 량
B0	3.0	
B-	2.7	
C+	2.3	양 호
C0	2.0	
C-	1.7	
F	0	불 량
W	0	Withdraw
P, NP	0	청강·연구

② 동일교과목을 재수강하였을 때는 그 중에서 양호한 성적 하나만 인정한다.

제24조 (이수인정 평점)

학생의 수강과목별 출석율이 강의실시 시간의 3분의2 이상이고 학업성적 등급이 C0(2.0)이상이면 이수학점에 가산한다. 그러나 각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총평량평균은 3.0(B0)이상이어야 한다.

제25조 (편입학자 학점인정)

편입학자의 기득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9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수업연한은 1학기 단축할 수 있다.

제6장 논문자격시험 및 외국어시험, 학위논문 및 학위수여

제26조 (논문자격시험 및 외국어시험)

- ① 학생은 21조에 규정된 소정의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자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가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학위논문에 준한다.
- ⑤ 논문자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6조의 2 (논문제출시한)

- ① 석사학위과정은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4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에, 석·박사통합과정에서는 8년 이내에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휴학 및 제적기간은 제1항의 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각 학위과정의 학생으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제27조 (학위논문)

학위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28조 (학위수여)

- ① 학위수여에 관한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본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다음과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 1. 사회복지학 석사(Master of Social Welfare : M.S.W.)
 - 2. 사회복지학 박사(Ph.D. in Social Welfare)
- ②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경우 과정이수를 중단하더라도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논문 관련 절차를 완료한 자에게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③ 본 대학원과의 협약에 의하여 해외 대학(원)에서 공동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관련 협약 및 내규에 따른다.

제28조의2 (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4.12.>

제7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29조 (연구과정 입학자격)

본 대학원 연구과정 입학자격은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제30조 (연구연한)

연구과정의 연구연한은 1년으로 한다.

제31조 (실적증명)

본 대학원 연구과정에 1년간 이수한 자에게는 연구실적증명서를 발급한다.

제32조 (공개강좌)

본 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 또는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공개 강좌의 제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제8장 상 별

제33조 (장학금 지급)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한다.

제34조 (징계)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9장 조 직

제35조 (직제)

본 대학원에 원장, 부원장, 그밖에 필요한 교원과 사무직원을 둔다.

제36조 (전공 주임교수)

- ① 본 대학원의 학칙 제3조에 규정된 전공에는 전공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여러 전공을 겸임할 수 있다.
- ② 전공 주임교수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제37조 (대학원운영위원회 구성)

본 대학원에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4인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38조 (겸임교수 및 객원교수)

- ① 본 대학원은 교내·외의 관련학과 교수를 겸임교수 및 객원교수로 둘 수 있다.
- ② 겸임교수 및 객원교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의 겸임교수 규정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겸임교수 및 객원교수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39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생의 입학, 퇴학 및 과정의 수료 인정에 관한 사항
- ② 전공의 신설과 폐지 및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
- ③ 수업계획에 관한 사항
- ④ 본원의 규정 등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 ⑤ 장학금·연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⑥ 교원 인사에 관한 사항
- ⑦ 기타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9조의 2 (대학원위원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위원회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별도심의 를 거쳐야 한다.

- ① 학과(계약학과 포함)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총 입학정원 증원 및 대학원간 정원조정 사항
- ③ 학위수여요건 변경 사항
- ④ 학위수여 취소 사항
- ⑤ 대학원간 통합관리 및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⑥ 대학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5.04.12.>

제40조 (의결방법)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 (임기)

본 대학원의 원장, 부원장, 전공주임교수,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될 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2조 (사회복지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는 사회복지대학원의 부설연구소로 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43조 (사회복지대학원 발전위원회)

본 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교내외 인사로 구성된 사회복지대학원 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장 준용규정

제44조 (준용규정)

본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대학원 학칙 및 시행 세칙과 연세대학교 학칙 및 관

례에 따른다.

제11장 부 칙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 2조, 제 3조 2호 내지 5호, 제 5조 3호, 제 10조 1항 내지 4항, 제 13조 2항, 제 18조 2항, 제 21조 1항, 제 26조 2항 내지 5항, 제 37조)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 3조 1항)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 2조, 제 2조의 2, 제 3조 1항, 1호 내지 2호, 2항, 5항, 제 6조, 제 10조, 제 13조 1항 및 2항, 제 21조, 제 23조 1항, 제 26조 1항, 2항, 3항, 제 26조의 2, 제 38조 1항, 제 44조)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경과조치) 이 학칙개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6)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 3조 제2항, 제 10조 제1항, 제 18조 제1항 및 제2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7)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6조, 제13조 제1항)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8)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제28조의2, 제39조의2)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전 졸업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며, 이 개정학칙 발효 전에 시행한 사항들은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 (9)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1항 및 2항, 13조 3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 (10)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26조 제1항, 제5항, 제28조)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11) (시행일) 이 개정학칙(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8조 제3항)은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석사학위과정 세부관심분야 변경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일: 2017.05.23

개정일: 2018.02.12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회복지대학원 학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석사학위과정 제1세부관심분야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변경 신청) ① 석사학위과정의 경우는 입학 후 첫 학기에 한하여 제1세부관심분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행정팀에서 신청서식을 교부받아 작성하여 학기 3분의 2선이 포함되는 주간에 제출한다.

제3조(승인 절차) 운영위원회는 세부관심분야 변경 신청에 대해 심의하며, 변경 신청서에 대한 원장의 승인 결재로써 가부를 확정한다. 단, 원장의 승인 결재 전에 해당 지도교수들의 동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1조, 제2조 제1항)은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어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일: 2017.05.23

개정일: 2018.02.12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26조 제5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 인정 범위) ① 외국어시험은 기준 점수 이상의 공인 영어능력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면제 받을 수 있다. 공인 영어능력시험의 종류와 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다.

공인 영어능력시험	기준 점수
토플(IBT)	88
토플(CBT)	230
토플(PBT)	570
토익	800
텡스	710

② 공인 영어능력시험 점수는 입학 학기 또는 논문자격시험 응시 학기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공인 영어능력시험 점수는 제출 학기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 인정 가능하다.

제3조(기타 면제 사유) ① 입학 후 SSCI급 저널에 주저자 혹은 3인 이내 공저 논문을 게재한 경우 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단, 교내 사회복지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영어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② 영어권 국가 대학에서 정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영어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외국어시험) ① 외국어시험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 영어자체시험에 응시하여 80점 이상(100점 만점)을 받아야 한다.

② 단, 영어자체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 점수는 토플(IBT) 75점, 토플(CBT) 200점, 토플(PBT) 500점, 토익 630점, 텡스 530점 이상이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기준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도교수의 요청 및 원장의 승인에 의해 영어자체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조(대체 강좌) ① 외국어시험 면제를 받지 못하고 영어자체시험도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외국어학당에서 개설하는 '대학원 외국어시험 영어 대체 강좌' 이수으로써 외국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② 해당 강좌 수강 및 이수 요건 등에 대해서는 외국어학당에서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정한 지침을 따른다.

제6조(외국인 학생)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는 외국어시험 면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 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외국어시험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 제1항, 제4조 제3항)은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